

개발사업지역 주소정보시설 설치이행 통보 및 설치비용 납부서

제 호 납부고지서		
사업명		
위치		
인 가 내 용	사업구분	
	사업기간	
	인가일	
납 부 의무자	성명 (법인명)	
	주소	
설치비용		원
납부기한		년 월 일
「도로명주소법」 제26조제4항·제5항,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하오니 납부기한까지 주소정보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내 은행 또는 우체국에 설치비용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		
※ 이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「행정기본법」 제36조에 따라 이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이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		
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직인		

제 호 영수확인 통지서 (해당 지방자치단체 통보용)		
사업명		
위치		
인 가 내 용	사업구분	
	사업기간	
	인가일	
납 부 의무자	성명 (법인명)	
	주소	
설치비용		원
납부기한		년 월 일
위의 금액을 납부하였음을 통지합니다.		
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		

제 호 영수증 (납부자 보관용)		
사업명		
위치		
인 가 내 용	사업구분	
	사업기간	
	인가일	
납 부 의무자	성명 (법인명)	
	주소	
설치비용		원
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.		
년 월 일 은행·우체국		